

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제41조의2제1항 관련)

1. 허가사항 위반

위반행위	부과액 산정식
가. 건축물의 건축	건물시가표준액×위반면적×50/100
나. 건축물의 용도변경	건물시가표준액×위반면적×30/100
다. 공작물의 설치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50/100
라. 토지의 형질변경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30/100
마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30/100
바. 죽목 벌채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30/100

2. 신고사항 위반

위반행위	부과액 산정식
가. 건축물의 건축	건물시가표준액×위반면적×25/100
나. 건축물의 용도변경	건물시가표준액×위반면적×15/100
다. 공작물의 설치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25/100
라. 토지의 형질변경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15/100
마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15/100
바. 죽목 벌채	개별공시지가×위반면적×15/100

3. 비고

가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액 산정식의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.

나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: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
- 2)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: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